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제대군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 심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9명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지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내 2개 과장(심사2과장 및 심사3과장)의 보임 직급을 상호 조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경기남부보훈지청 및 경기북부보훈지청”을 “경기남부보훈지청·경기북부보훈지청·인천보훈지청·강원서부보훈지청·경남동부보훈지청”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을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으로, “전산사무관으”를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심사2과장”을 “심사3과장”으로, “심사3과장”을 “심사2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1명)”을 “1명),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을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처에 둔다.

별표 3 총계 “315”를 “311”로 하고, 일반직 계 “312”를 “308”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8”을 “29”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을 “6”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7”을 “1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3”을 “19”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322”를 “318”로 하고, 일반직 계 “319”를 “31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8”을 “29”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을 “6”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9”를 “15”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를 “1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8 총계 및 일반직 계 “9”를 각각 “10”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9 총 계 및 일반직 계 “9”를 각각 “10”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9의3 총 계 및 일반직 계 “9”를 각각 “10”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9의4 총계 및 일반직 계 “9”를 각각 “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한다.

별표 10 총계 “873”을 “87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863”을 각각 “86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19”를 “12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08”을 “211”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1”을 “223”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3”을 “21”로 한다.

별표 10의2 총계 “877”을 “88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867”을 각각 “873”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19”를 “12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24”를 “227”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09”를 “211”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3”을 “21”로 한다.

별표 11 총계 “49”를 “5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8”을 각각 “52”로 하며,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의무기록 해독 담당) 4”를 신설한다.

별표 11의2 총계 “51”을 “5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50”을 각각 “54”로 하며,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의무기록 해독 담당) 4”를 신설한다.

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0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0년 2월 29일”을 “2022년 2월 28일”로 한다.

총리령 제137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0년 2월 29일”을 “2022년 2월 28일”로, “2020년 3월 1일”

을 “2022년 3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국가보훈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제협력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0년 9월 30일까 지
2)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 관	3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0년 9월 30일까 지
3)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2021년 7월 26일까 지

[별표 14]

국가보훈처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
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보훈지청) ① (생략)	제17조(보훈지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지청에 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경기남부보훈지청 및 경기북부보훈지청만 해당한다)를 두되, 각 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서부보훈지청·강원동부보훈지청·울산보훈지청·경남서부보훈지청·충남서부보훈지청·충남동부보훈지청·충북남부보훈지청·충북북부보훈지청·경북북부보훈지청·전남동부보훈지청·전남서부보훈지청·전북동부보훈지청·전북서부보훈지청에는 보훈과 및 보상과를 둔다.	② ----- -- <u>경기남부보훈지청·경기북부보훈지청·인천보훈지청·강원서부보훈지청·경남동부보훈지청--</u> <u>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u> <u>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훈심사위원회) ① (생략)	제19조(보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 및 심사4과	② ----- -----

를 두되, 심사1과장 및 <u>심사2과장</u> 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u>심사3과장</u> 및 <u>심사4과장</u> 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u>심사3과장</u> ----- ----- <u>심사2과장</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 ----- 1명), <u>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u> .
제23조(평가대상 조직) <u>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u> 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23조(평가대상 조직) <u>국가보훈처</u> ----- ----- -----.
제24조(한시정원) (생략)	제24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처에 둔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15</u>	<u>311</u>	-4
·	·	·	
·	·	·	
일반직 계	<u>312</u>	<u>308</u>	-4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u>2</u>	<u>3</u>	+ 1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8</u>	<u>29</u>	+ 1
·	·	·	
·	·	·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3</u>	<u>6</u>	+ 3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7</u>	<u>13</u>	-4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3</u>	<u>19</u>	-4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
·	·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2</u>	<u>318</u>	-4
·	·	·	
·	·	·	
일반직 계	<u>319</u>	<u>315</u>	-4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u>2</u>	<u>3</u>	+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8</u>	<u>29</u>	+ 1
·	·	·	
·	·	·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3</u>	<u>6</u>	+ 3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9</u>	<u>15</u>	-4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2</u>	<u>18</u>	-4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
·	·	·	

[별표 8]

국립영천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u>	<u>10</u>	+ 1
일반직 계	<u>9</u>	<u>10</u>	+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u>2</u>	+ 1

[별표 9]

국립임실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u>	<u>10</u>	+ 1
일반직 계	<u>9</u>	<u>10</u>	+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 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u>2</u>	+ 1

[별표 9의3]

국립산청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u>	<u>10</u>	+ 1
일반직 계	<u>9</u>	<u>10</u>	+ 1
·	·	·	
·	·	·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u> <u>·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u> <u>보 또는 전산서기보</u>	<u><신 설></u>	<u>1</u>	+ 1

[별표 9의4]

국립괴산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u>	<u>10</u>	+ 1
일반직 계	<u>9</u>	<u>10</u>	+ 1
·	·	·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u> <u>서기 · 시설서기 또는</u> <u>전산서기</u>	<u><신 설></u>	<u>1</u>	+ 1
·	·	·	

[별표 10]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3</u>	<u>879</u>	+ 6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863</u>	<u>869</u>	+ 6
일반직 계	<u>863</u>	<u>869</u>	+ 6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119</u>	<u>122</u>	+ 3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08</u>	<u>211</u>	+ 3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21</u>	<u>223</u>	+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3</u>	<u>21</u>	-2
.	.	.	
.	.	.	

[별표 10의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7</u>	<u>883</u>	+ 6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867</u>	<u>873</u>	+ 6
일반직 계	<u>867</u>	<u>873</u>	+ 6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119</u>	<u>122</u>	+ 3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24</u>	<u>227</u>	+ 3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09</u>	<u>211</u>	+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3</u>	<u>21</u>	-2
.	.	.	
.	.	.	

[별표 11]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9</u>	<u>53</u>	+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48</u>	<u>52</u>	+ 4
일반직 계	<u>48</u>	<u>52</u>	+ 4
.	.	.	
.	.	.	
<u>전 문 경 력 관</u>	<u><신 설></u>	<u>4</u>	+ 4
<u>다군(등록심사 담당)</u>			
.	.	.	
.	.	.	

[별표 11의2]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u>	<u>55</u>	+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0</u>	<u>54</u>	+ 4
일반직 계	<u>50</u>	<u>54</u>	+ 4
.	.	.	
.	.	.	
<u>전 문 경 력 관</u>	<u><신 설></u>	<u>4</u>	+ 4
<u>다군(등록심사 담당)</u>			
.	.	.	
.	.	.	